

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가.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, 최근 다양화되는 도시 구조(대학 캠퍼스, 대규모 상업·문화시설의 밀집 등) 내 보행자들의 실질적인 최단거리 이동 동선 반영과 안전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임.

나. 특히 대학가 및 대형 상업·문화지구 연계 구간은 보행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, 불합리한 보행로 배치로 인해 시민들이 원거리를 우회하거나 무단횡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
다.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범위에 '대학가 및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간 보행 연결성 확보' 항목을 신설하고,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등 시설 정비를 위해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인천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'생활 밀착형 최단거리 보행 환경'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 확대 (안 제 9 조제 1 항제 7 호 신설)

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범위에 '대학교 캠퍼스, 연구단지, 대규모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 밀집 지역 간의 보행 연결성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'을 명시함.

나. 유관기관(경찰 등) 협력 및 횡단보도 설치 요청 구체화 (안 제 15 조제 2 항 신설)

시장이 단거리 보행로(횡단보도 등) 확보를 추진할 때, 시설 설치 권한을 가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행정적·재정적 협의를 진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함.

3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 조 문	개 정 안
제 9 조(보행환경개선사업)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보도 및 보행자길 정비 2.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3. ~ 6. (생 략)	제 9 조(보행환경개선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~ 6. (현행과 같음) 7. 대학교 캠퍼스, 연구단지, 대규모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 밀집 지역 간의 보행 연결성 확보 및交通安全시설 설치 지원
제 15 조(유관기관 협력 등)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	제 15 조(유관기관 협력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은 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른 보행 연결성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